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정진술 의원
- 나. 의안번호: 제1402호
- 다. 발의일자: 2020. 4. 2.
- 라. 회부일자: 2020. 4. 8.

2. 제 안 사 유

- 현재 수도권지역에서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고,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수도권특별법”)이 폐지될 예정이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하 “대기환경개선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종전의 표현 중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을 관계 기준에 따라 수정하려는 것임

3. 주 요 내 용

- 가. 조례의 근거 및 정의, 적용범위 등을 신설된 대기관리권역법을 반영하여 수정함(안 제1조~제3조)
- 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 다. 수도권특별법이 대기관리권역법으로 대체된 사항을 반영함
- 라.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제19조의4 신설)
- 마.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 바.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신설)
- 사. 어려운 한자어 표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표현(소요자금, 기산 등)들을 수정하고,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표현을 정정함
- 마. 다른 조례에서 수도권특별법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정비함(부칙 제2조)

4. 참 고 사 항

- 가. 관계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대기환경개선 조례」에 반영하고, 부칙 개정을 통해 다른 조례에서 「수도권특별법」에 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대기관리권역법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대기오염으로부터 수도권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도권특별법」이 2003년 12월에 제정 및 시행되어 왔으나, 미세먼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보다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이 2019년 4월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음
-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지역을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총량제 관리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권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대기환경개선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대부분의 내용에는 공감함
- 다만 안 제3조의2(시행계획의 수립)과 제19조의2(특정 용도 자동차에 대한 지원)부터 제19조의4(공항의 대기개선계획에 대한 승인 등)까지 및 제22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는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중복해서 기재한 것으로 입법체계상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21조는 시장이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이외에 별도의 세입이 없고 국비에 맞춰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특별회계 설치의 당위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현행 「대기환경개선 조례」에는 어려운 한자어나 띄어쓰기 및 부자연스러운 표현 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 2019)에 맞춰 수정할 필요가 있음.

<수도권특별법과 대기관리권역법의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수도권특별법	대기관리권역법
관리지역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	전국(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대상물질	대상물질 7종(총량관리 3종)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 단위 수립
사업장 배출허용총량할당	시도지사 위임	시도 위임시 환경부와 협의하여 업체별 할당량 결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일정 시설규모·발생량 이상	전체 총량관리 사업장
사업장 특례	· 전체 총량사업장에 배출허용기준 완화 · 기본·초과 배출부담금 면제	· 3종 총량사업장에 한하여 배출 허용기준완화